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7.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년 7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통합방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협의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위원 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안 제4조제2항)
-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4조제3항)
-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조정할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지 ○ 시·구협의회는 자치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시 구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현행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유권해석을 해봤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유권해석은 안했으나 향군법 시행령에 도, 시, 군, 구, 동에도 구분 설치하게 되어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02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1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수를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하여 너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 구성에 따른 불협화음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구·동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위원들이 시 협

의회 중복 가입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 시·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시·구는 자치시·구를 의미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구 협의회 구성이 불필요하여 삭제

2. 주요골자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함 위원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시·구협의회에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두는 것을 시협의회에 두는 것으로 조정 (안 제3조제5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6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시·구협의회”를 “시협의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협의회의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되 통 합방위협의회업무, 민방위재난 담당업무 및 심리전에 대비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시·구협의회에는 작전, 예비 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구성 및 운영) ① 30인 이내..... 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개정안과 같음) ⑤시협의회.....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2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통합방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위원 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안 제4조제2항)
-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4조제3항)
-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3. 부천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시협의회에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위원 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 ③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생략)</p> <p>1.~5.(생략)</p> <p>②(생략)</p> <p>③(생략)</p> <p>1. <u>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u></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현행과 같음)</p> <p>1.~5.(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1. <u>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u>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생략)</p> <p>③(생략)</p> <p>3. <u>부천시역 소재 국군기무부대의 장</u></p> <p>4. <u>국가안전기획부 부천시역 관계자</u></p> <p>④(생략)</p> <p>⑤<u>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민방위재난담당업무 및 심리전에 대비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u>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3. <u>부천시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u></p> <p>4. <u>국가정보원 부천시역 관계자</u></p> <p>④(현행과 같음)</p> <p>⑤<u>시험의회에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u></p>
<p>제4조(실무위원회) ①(생략)</p> <p>②<u>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이를 정한다.</u></p> <p><신설></p>	<p>제4조(실무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u>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위원 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u></p> <p>③<u>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신설></p> <p>제7조(시행규칙) (생략)</p>	<p>제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